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320
----------	------

제 안 년 월 일 : 2024년 12월 19일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15호)와 서상열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34호),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52호)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2024년 12월 18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 내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시립체육시설의 질적향상을 위해 시설관리와 운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서

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시립체육 시설의 전용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시장이 시립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사용·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사용 허가의 제한도 위임사무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 사용료 감면 조항에 ‘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포함함(안 제10조제3호 라목)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제5조의3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의3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u>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u></p>
<p>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p>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 설>

제23조(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장에 따라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하는 체육시설과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 ~ 12. (생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 1.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의3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

2. ~ 12.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별표 3의 전용사용료 면제
가. ~ 다. (생략)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3. 별표 3의 전용사용료 면제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
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